

04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19세 미만)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하여서는 안됩니다.

예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으로서

- 1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2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 3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5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동물해부실습 대체 실감형 콘텐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dunet.net 에서 활용 가능



학교에서 동물을 이용한 과학수업 시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고려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배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시스템 자료실(#56)에서 다운로드 가능

05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1) 역할

-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의 원칙에 따른 동물실험 시행 여부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도·감독
-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 등)

2) 법 시행('23.4.27.)으로 동물실험시행기관은,

- 심의 후 감독(Post Approval Monitoring, PAM) 의무 실시
- 위원회 정기 교육 이수
 -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검역본부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 주요내용
 - 1 동물보호 정책 및 동물실험 윤리 제도
 - 2 동물 보호·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 3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이용
 - 4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의 신속 변경심의의 가능
 -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후 위원장 승인으로 변경 가능(법제화)

*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5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55조(심의 후 감독), 제56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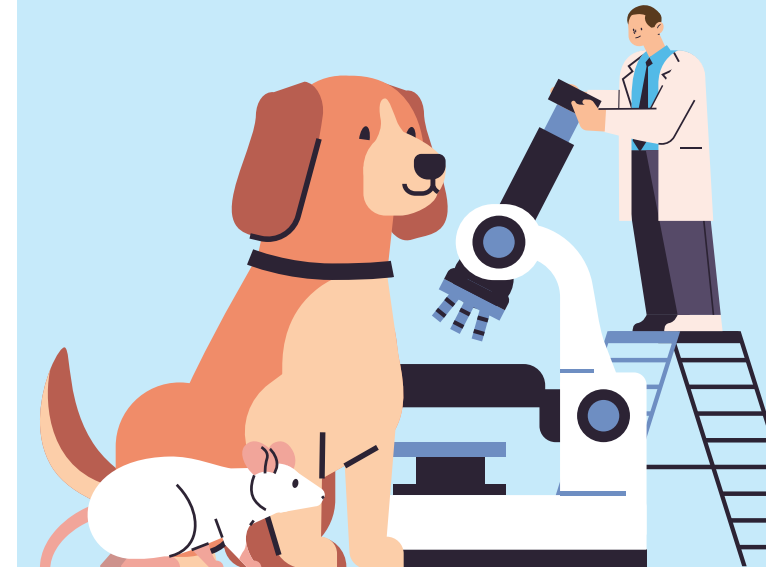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시스템 <https://www.animal.go.kr/aec>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Tel : 054)912-0519-0522 Fax : 054)912-0528 E-mail : loveanimal@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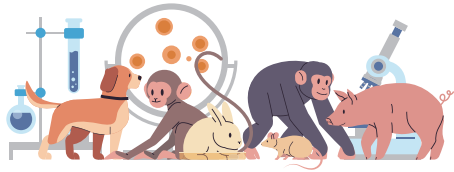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 윤리제도



01 동물보호법

1) 목적

-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2년 4월 전면개정으로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제47조~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개정사항

2022년 4월 전부개정 (101개 조항)	동물학대 행위 등의 구체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및 지원 ,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 동물 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 , 심의 후 감독 의무화 ,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2011년 8월 전부개정 (47개 조항)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의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 등 강화
2007년 1월 전부개정 (26개 조항)	동물의 등록제 도입,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화 , 동물의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마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
1991년 5월 제정 (12개 조항)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 하고 국민의 동물보호정신을 함양

02 전임수의사 제도

1) 전임수의사란?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의사**입니다.

2) 전임수의사가 꼭 있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은?

-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기관(실험동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제외)
- 실험동물의 감각능력, 지각능력, 고통등급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한 기관

3) 전임수의사 역할



동물 진료와 기술지원

수술, 검진, 예방접종 등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진단, 처치 및 치료 등을 담당합니다.



동물실험시설 관리 감독

실험동물이 실험 전후 사육·관리되는 동물실험시설이 동물에게 적절한 환경으로 유지되게끔 시설 전반을 관리 감독합니다.



동물복지와 윤리

동물실험 3R원칙에 따라 동물이 윤리적으로 사용되게끔 관리감독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합니다.



교육과 훈련

동물실험 수행자들에게 실험법, 동물을 다루는 법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합니다.



4) 전임수의사 자격요건

-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 이상 실험동물 관리 또는 동물실험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5)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자격교육 주요내용

- 1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 3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련 규정 : 「동물보호법」 제48조(전임수의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전임수의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전임수의사의 교육)

03 유실·유기동물, 봉사동물 실험 금지

- 유실·유기동물 및 봉사동물*은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
*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폭발물탐지견 등
- 다만, 2024년 4월부터는 예외 적용
-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을 선발하거나 훈련방식을 연구하는 경우로서 국가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경우

* 관련 규정 : 「동물보호법」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봉사동물의 범위)